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1. 자연환경분야

제목 (시행시기)	종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공원구역의 공원사업 시행 (2001 하반기 예정)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시행	공원의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구역 밖이라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과, 500-4266)
2.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세분화 및 허용행위기준 합리화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용도지구중 취약지구를 밀집 정도와 지역중심역할 수행여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하고 허용행위 차등화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행위기준 적용 -밀집취락지구는 금지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	자연공원법 제17조 (자연공원과, 500-4266)
3. 자연공원내 사유지의 협의매수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공원내 사유지중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 매수	자연공원법 제75조 (자연공원과, 500-4266)
4. 자연공원내 토지 매수 청구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 청구	자연공원법 제76조 (자연공원과, 500-4266)
5. 토양환경평가제도 실시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양수시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토양보전과, 500-4276)
6. 토양오염정밀조사명령제도 도입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시·도지사는 일정기준이상의 토양오염지역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토양보전과, 500-4276)

7.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강화 (2001 하반기 예정)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	토양오염원인자는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책임도 부담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 등의 경우 토양오염유발시설인 수자에게도 피해배상 등 책임의무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토양보전과, 500-4276)
8.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처벌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부당행위 (오염조사결과 부정발급, 조사기관 지정기준 위반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처벌규정 마련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4 (토양보전과, 500-4276)

2. 대기환경분야

제목 (시행시기)	종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대기환경기준 강화 아황산가스 (ppm)	1시간평균치: 0.25 24시간평균치: 0.14 연평균치: 0.03	1시간평균치: 0.15 24시간평균치: 0.05 연평균치: 0.0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대기정책과, 500-4276)
미세먼지 (µg/m³)	24시간평균치: 150 연평균치: 80	24시간평균치: 150 연평균치: 80	
납 (µg/m³)	15/3개월	0.5년	
2. 연료사용규제 강화	0.3%이하 중유 신규공급·사용 (서울 등 14개지역) (서울 등 14개지역) 0.5%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춘천 등 8개지역) 추가 (2001. 7. 1)	0.5%이하 중유사용 서울·부산·대구 등 14개지역에 대하여 황황량 0.3%이하 중유를 신규 공급·사용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충주, 제천, 당진, 목포 등 8개지역을 0.5%이하 중유공급·사용지역으로 추가 고시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99-129호, '99. 12. 3) (대기정책과, 500-4279)
진해시지역 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범위 확대	업무용시설 및 발전용시설: 05톤 중양난방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	업무용시설 및 발전용시설: 02톤 중양난방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	

대(2001. 9. 1)	난방 공동주택 : 전용면적 25평 이상	택 : 전용면적 18평 이상	
3. 제작자 배출 허용기준 강화 (2001. 1. 1)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원자, 왜관, 8인 이하 승합차 등)	질소산화물 : 1.02g/km 탄화수소 : 0.25g/km 일산화탄소 : 1.2g/km	질소산화물 : 0.95g/km 탄화수소 : 0.22g/km 일산화탄소 : 1.1g/km
4. 제작자 배출 가스 보증기간 연장(2001. 1. 1)	버스, 트럭 등 대형자동차	2년 또는 4만km	2년 또는 8만 km
5.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2001. 1. 1)	경자동차, 가솔자동차, 화물자동차	경자동차 -일산화탄소:25% -탄화수소:400ppm 가솔승용자동차 -탄화수소:400ppm 경유자동차(35분 이상) -매연:30% 경유자동차(35분미만) -매연:35%	경자동차 -일산화탄소:1.2% -탄화수소:220ppm 가솔승용자동차 -탄화수소:220ppm 경유자동차(35분 이상) -매연:25% 경유자동차(35분미만) -매연:30%

3. 수질 · 상하수도분야

제목 (시행시기)	종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2001. 1. 1)	80원 / 톤	110원 / 톤 한강수계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서울시·인천시 전역, 경기도지역 26개 시·군)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 (수질정책과, 500-4289)
2.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개선	<신설>	배출부과금 부과시 사업장규모별 부과계수를 도입하여 사업장규모에 따라 차등부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1종사업장 : 1.8~1.4 2종사업장 : 1.3 3종사업장 : 1.2 4종사업장 : 1.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수질정책과, 500-4289)
3. 배출부과금 기본부과금 감면 등 (2001. 1. 1)	<신설>	기본부과금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폐수재이용에 대하여는 감경제도를 도입하여 폐수재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불자원절약을 유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수질정책과, 500-4289)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4. 한강수계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 주체 변경 및 토지매수 범위 확대(2001 상반기)	토지매수주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국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농지매수 불가능, 토지매수시 지방세 부과 등 문제가 있어 토지매수 주체를 국가로 변경
토지매수범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외에도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수질정책과, 500-4289)
5.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용도 추가 (2001 상반기)	<신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지원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호의2 (수질정책과, 500-4289)
6.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요청제도 도입(2001 하반기 예정)	<신설>	환경부장관은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건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수도법 제4조의2 제5항 (수도정책과, 500-4336)
7.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정책 추진 의무화 (2001 하반기 예정)	<신설>	지자체에게 물수요관리 목표수립 등 물절약정책추진을 의무화 하고 -이를 달성치 못하는 경우 각종 개발사업 제한	수도법 제4조의2 (수도정책과, 500-4336)
8.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사업 가능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사업 가능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구역안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지원사업 가능	수도법 제6조의2 제1항 (수도정책과, 500-4336)
9. 수도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수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만 경영가능 (2001 하반기 예정)	수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만 경영가능	수도법 제8조, 제17조, 제17조의2 (수도정책과, 500-4336)
10. 물 다량 사용 신축건물에 중수도설치 의무화 (2001 하반기 예정)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중수도설치 권장가능	건축면적 6만㎡ 이상의 숙박업·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500㎡ 이상의 공장 등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화	수도법 제11조 (수도정책과, 500-4336)

10. 물다량 사용 신축건물에 중 수도설치 의무 화 (2001 하반기 예 정)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 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 권장가능	건축연면적 6만㎡이상의 숙박 업·복합상업, 1일 폐수배출량 1,500㎡이상의 공장 등을 신축하 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운영 의 무화	수도법 제11조 (수도정책과, 500-4336)
11. 물다량 사용 업종에 필수설 비설치 의무화 (2001 하반기 예 정)	모든 신축건물에 절 수설비설치 의무화	목욕장업, 숙박업, 골프장업의 경 우 기존 건물에도 필수설비 설치 의무화	수도법 제11조의2 (수도정책과, 500-4336)
12. 빗물이용시 설 설치 의무화 (2001 하반기 예 정)	<신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 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수도법 제11조의3 (수도정책과, 500-4336)
13. 지역별 수질 기준제도 도입 (2001 하반기 예 정)	먹는물에 대하여 전 국적으로 통일된 수 질기준 적용	시·도별로 국가에서 정하는 수질 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추가 적으로 수질기준 설정 가능	수도법 제11조 제3항 (수도정책과, 500-4336)
14. 수도사업자 에 대한 수량분 석 의무화 (2001 하반기 예 정)	수도사업자는 자신 이 생산하는 수돗물 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뿐만 아니라 취수량·정 수량 및 공급량에 대한 수량분석 도 실시	수도법 제19조 제1항 (수도정책과, 500-4336)
15. 간이 상수 도·소규모급 수시설 관리강 화(2001 하반기 예정)	간이상수도 및 소규 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 조예 로 정함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를 시장·군수·구 청장으로 명시하여 관리 책임 부 여	수도법 제32조, 제38조의2 (수도정책과, 500-4336)
16. 한국 상하수 도협회 설립 (2001 하반기 예 정)	수도사업자, 수도관 련종사자 등으로 한 국수도협회 설립	하수도관계자까지 포함하여 한국 상하수도협회로 확대·개편하고,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	수도법 제39조, (수도정책과, 500-4336)
16. 한국 상하수 도협회 설립 (2001 하반기 예 정)	수도사업자, 수도관 련종사자 등으로 한 국수도협회 설립	하수도관계자까지 포함하여 한국 상하수도협회로 확대·개편하고,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	수도법 제39조, (수도정책과, 500-4336)
16. 한국 상하수 도협회 설립 (2001 하반기 예 정)	수도사업자, 수도관 련종사자 등으로 한 국수도협회 설립	하수도관계자까지 포함하여 한국 상하수도협회로 확대·개편하고,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	수도법 제39조, (수도정책과, 500-4336)
17. 수돗물 수질 기준 중 탁도항 목 기준강화 (2001 하반기 예 정)	1.0NTU이하 NTU: Nepheometric Turbidity Unit	5.0NTU이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 1항 별표1 (수도관리과, 500-4340)
18. 간이·전용 상수도 및 소규 모 급수시설에	일반세균 등 9개 항 목	볼수, 방간, 알루미늄 항목 추가(12 개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

대한 수질검사 항목 확대(2001 하반기 예정)			1항 별표1 (수도관리과, 500-4340)
19. 건물·지하 철 등의 부지로 부터 공공하수 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 수'에 포함 (2001 하반기 예 정)	하수라 함은 생활이 나 사업에 기인하거 나 부수되는 오수 되는 우수를 말함	건물·지하철 등의 부지로부터 공 공하수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 수의 범위에 포함시켜 하수도 사 용료 징수	하수도법 제2조 제2호 (하수도과, 500-4343)
20. 마을하수도 규모 규정 및 설 치협의 권한 이 양 (2001 하반기 예 정)	<신설> 마을하수도 설치시 환경부장관과 협의	마을하수도의 규모를 1일 하수처 리능력 50톤이상 500톤미만으로 정함 설치협의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50톤미만은 오수·분뇨법에 따 라 개별 우수처리시설로 설치· 관리 -500톤이상은 환경부장관의 인 가를 거쳐 설치	하수도법 제2조 제2호의3 및 제6조의2 (하수도과, 500-4343)
21.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2001 하반기 예 정)	시장·군수가 수립 하는 하수도장비기 본계획에 기본시설, 정비사업실시순위 등에 관한 사항만 포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 장 처리수의 재이용계획을 포함시 키도록 하여 처리수 재이용을 의 무화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과, 500-4343)
22. 하수종말처 리시설 설치명 령 (2001 하반기 예 정)	<신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 하도록 되어있는 하수종말처리시 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설치하지 아니한 시장·군수에게 환경부장 관이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과, 500-4343)
23. 하수도용 자 재기준 설정 (2001 하반기 예 정)	<신설>	하수도에 사용되는 자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함	하수도법 제15조 제7항 및 제41조의2 (하수도과, 500-4343)
24. 하수처리장 부적정 운영에 대한 제재 (2001 하반기 예 정)	<신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자가 하수 처리구역안의 하수를 처리장에 유 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유입된 하수를 회중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등 불법 운영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함	하수도법 제1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 제2호 (하수도과, 500-4343)
25. 하수도사용 료 등의 상습체 납시 증가산금 부과 (2001 하반기 예 정)	하수도사용료 등의 체납시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 는 가산금 부과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증가산금을 징수 (단, 증가산금 징수기간은 60월 이 내이며,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 만인 경우에는 적용제제)	하수도법 제38조 제2항 (하수도과, 500-4343)

26. 방류수 수질 검사 및 기록보존 의무 (2001 하반기 예정)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 검사 실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16조 제2항 (하수도과, 500-4343)
---------------------------------------	------------------------------------	------------------------------------------------------------------------	--------------------------------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낙동강수계 하천구역에서의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 「수집오염사고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폐수배출시설 관리」,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등 주민에 대한 지원」, 「낙동강수계 불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는 여기에 담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폐기물분야

제목 (시행시기)	중점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의 사용억제 (2001 하반기 예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실천사항 위반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후 과태료 부과	포장기준 및 1회용품 사용 위반자에 대해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3호 (폐기물정책과, 500-4037)
2.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권자 변경 (2001. 7월 예정)	폐기물 수출입에 있어 산업정책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출입을 허가	폐기물 수출입허가 대상품목이 축소되어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담당하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을 허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폐기물정책과, 500-4037)
3.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 사업장 범위 확대 (2000. 1월 예정)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포함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생활폐기물과, 500-4310)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철거 등 다룬공사와 분리발주 (2000. 1월 예정)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적법입찰제에 한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리발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시 철거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기관의 발주자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산업폐기물과, 500-4313)
5.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강화 (2001. 1 예정)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간당 처리능력 0.2톤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시설을 확대 2002. 12. 31까지는 권고 기준, 2003. 1월부터 2006. 12월까지의 완화된 기준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폐기물과, 500-4310 산업폐기물과, 500-4313)

6. 다이옥신 측정주기 (2001. 1 예정)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연 2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경우 현행과 같이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그 미만의 시설은 연 1회 이상으로 측정횟수를 정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생활폐기물과, 500-4310 산업폐기물과, 500-4313)
7. 폐형광등 회수·처리 시범사업 실시 (2001. 7월 예정)	중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수도권 중심으로 폐형광등을 회수·처리하는 시범사업 실시 2002년까지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원재활용과, 500-4315)

5. 환경영향평가 등

제목 (시행시기)	중점	달라지는 내용	비고
1.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 실시 (2001. 1. 1.)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영향평가 개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	하나의 사업이 2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환경평가과, 500-4268)
2.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수렴범위 확대 (2001. 1.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내의 주민의 의견만을 수렴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특별대책지역 등인 경우에는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 외의 자의 의견수렴 의무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환경평가과, 500-4268)
3.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분리체결 (2001. 1. 1.)	<신설>	적정영향평가비용을 확보하여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대행계약과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체결 의무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환경평가과, 500-4268)
4. 해안에서 광물 및 골재 채취 시 환경영향평가 (2001. 1. 1.)	사업자별 골재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골재채취량이 100만㎡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수에 관계없이 광업법상 단위광구 안에서 골재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골재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경우로 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 (환경평가과, 500-4268)
5.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시행 (2001. 2. 4)	<신설>	제품의 연료 채취, 제조,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 등으로 계량화하여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타이어, 예저기 등에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시제도 시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환경경제과, 500-4249)